

회원/후원회원 자동이체 신청서

금융기관 및 결제대행사(효성에프엠에스㈜) 제출용

◆ 수납업체 및 목적 (수납업체 기재란)

수 납 업 체		수 납 목 적	
대 표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 자동이체 신청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신청정보	신 청 인	예금주와 관계 : ()	연 락 처	
	납 부 금 액	<input type="checkbox"/> 고정금액 (원) <input type="checkbox"/> 변동(추가 계약내용에 따름)	납 부 일	매월 일 *미납시 일, 일 재출 금
금융거래정보	은 행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input type="text"/>		
	예금주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예 금 주 휴대전화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인정보 활용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 동 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수집 및 이용목적 : 효성 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div>		
	개인정보 제3자 제 공 동 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효성에프엠에스㈜, (주)엔컴커뮤니케이션, 금융기관(하단 신청가능은행 참조), 통신사(SK, KT LGU+, CJ 헬로비전)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www.efmc.co.kr / 제휴사 소개 메뉴 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부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 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div>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 효성에프엠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효성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_____ (인) 또는 서명

1.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금주의 별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2. 인감 또는 서명은 출금통장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3.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서를 신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4. 신청가능은행 :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SC, 기업, 외환, 씨티, 산업, 새마을,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수협, 신한, 우체국, 동양증권, 삼성증권

자동이체 동의서 작성과 관련한 FAQ

1. 자동이체 동의서 (신청서)와 관련하여 샘플양식을 받았습니다. 이 양식은 절대로 바꾸면 안되나요?

=>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양식을 바꿔야 하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면 금융당국의 자동이체 양식에 대한 가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양식의 틀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2. 세무, 배달, 렌탈 등의 업체는 상거래 계약서 (신청서)에 자동이체 자동이체 동의 부분을 포함하여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에 도 별도로 자동이체 동의서를 분리해서 받아야 하나요?

=> 금융당국에서는 상거래 상거래 계약과 자동이체 동의부분을 분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정부 정책의 움직임을 움직임을 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누락 되어서는 안됩니다.

3. 동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사항은 무엇인가요?

=>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은행에서의 자동이체 양식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양식에는 납부자 와 자동이체 거래에 대한 명확한 법적 요인을 갖추고 자동이체 실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업체정보, 출금(수납)목적, 신청인, 신청인 연락처, 출금금액(납부금액), 출금일(납부일),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인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및 제 3자 제공동의 부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동이체 자동이체 신청과 관련된 신청인의 동의 (서명 또는 인장)입니다. 만약 신청인과 예금주가 예금주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인과 예금주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대부분 가족의 일원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4. 출금금액 (납부금액)이 변동인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하나요 하나요?

=> 이용업체는 출금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명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스 사용량에 따른 체적량을 산자부 고시단가로 함, 00000 회의 수입 조건표 에 따름

변동금액으로 설정한 것은 납부자와 이용업체간의 상거래간에 합의에 의한 것이 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호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용업체만이 알고 있는 내용을 기술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을 기재할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이체 신청서에 반드시 날짜를 기입해야 기입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자동이체를 동의한 날짜가 기입되지 않으면 그 동의서의 효력 기준일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무효가 됩니다. 자동이체는 매월 정기적으로 수납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첫 거래일 거래일 (첫 출금일)을 납부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거래가 정확하게 고지가 되는 경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용업체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주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6. 배포된 표준 동의서 양식에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기입란에 박스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며 꼭 이렇게 이용해야 하나요?

=> 박스칸으로 구분한 이유는 좀 더 명확하게 숫자를 기입하게 하여 추후 전산화를 순조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이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정확하게 칸에 기입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7. 연락처를 기입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모두 기입하여야 하나요?

=> 신청인과 예금주가 동일하다면 예금주 휴대전화번호에만 기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동일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연락처를 기입하고 예금주의 휴대전화번호도 기입하여야 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예금주의 휴대전화번호가 자동이체 원장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합니다. 명확한 자동이체 등록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8. 협력사에서 자동이체 동의서 양식을 업체에 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업체에서 또 다시 양식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금융기관에서는 무분별한 양식을 통합하기 위해서 자동이체 동의서 양식을 사 전에 승인 받도록 계약에 명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표준양식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나 이용업체 및 협력사의 의견에 따라 당사에서는 별도의 금융당국 의 조치가 있기까지 혼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라면 가급적 당사의 표준양식을 이용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업체가 이용하는 양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나 필수 항목이 빠져 있다면 표준양식을 이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주세요.

=>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은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본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차로 출금이체 이용업체 정보의 관리 통합을 금년에 완료할 예정이며 2 차로 자동이체정보 수집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0. 자동이체 동의서가 없다고 하는 이용업체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최근의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컴퓨터 등의 사기 등으로 피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자에게 출금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동의 없는 출금으로 인한 불이익 피해는 출금으로 인한 이익에 몇 배에 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이체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